

글로벌 전자무역의 실현을 위한 eUCP의 역할과 개정방안*

최석범** · 홍성규***

-
- I. 서론
 - II. 글로벌전자무역에서의 eUCP의 의의와 특징
 - III. eUCP의 주요내용과 서류심사기준
 - IV. eUCP에서 전자제시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 V. 결론
-

I. 서론

국제무역에서도 글로벌전자무역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국제무역거래절차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볼레로 선화증권과 eUCP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국제무역거래상에서 서류와 관련한 문제가 산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시 된 것이 선화증권의 위기(The B/L Crisis) 또는 고속선문제(The Fast Ship Problem)였다.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는 기존의 선화증권이 목적지에 물품보다 선화증권이 먼저 도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되어 왔었으나 현재 선박의 건조기술과 항해기술의 향상, 그리고 인접국가간의 무역 등으로 인하여 목적지에 선화증권이 물품보다 늦게 도착함으로써 발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CMI에서는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유럽에서는 이러한 선화증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볼레로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볼레로 선화증권이

*한국통상정보학회 2002년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청주과학대학 비서정보과 조교수

라는 전자선화증권의 최종판이 태동되었다.

SWIFT와 TT Club이 공동출자한 국제블레로회사가 제공하는 블레로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블레로 선화증권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화증권의 위기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실무적으로 전자신용장의 도입이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는 전자신용장거래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선적서류의 전자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실무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블레로 선화증권을 비롯한 블레로 서비스에서는 선적서류의 DB화를 통하여 선적서류의 전자제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신용장이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블레로 선화증권을 발판으로 전자신용장 도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한 것은 바로 eUCP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화환신용장통일규칙으로 사용되어 왔던 UCP500의 경우에는 종이서류에 기반을 둔 화환신용장거래에 적용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전자신용장이나 선적서류의 전자제시에 적용할 수 없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자신용장거래에는 적용하기가 부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UCP500의 개정과는 별도로 전자제시에 적용할 내용이 새로이 제정되어 UCP500의 부칙으로서 발효되도록 하였다.

기존에 전자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ICC에서는 새로운 통일규칙을 제정하는 대신에 전자제시에 대한 UCP500의 적용상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부칙으로서 eUCP를 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헌조사와 법률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eUCP와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전자무역에서의 eUCP의 역할을 조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정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 방향을 모색하여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글로벌 전자무역에서의 eUCP의 의의와 특징

1. eUCP의 개발과정

2000년 5월 24일에 파리에서 개최된 회합에서 금융기술 및 관행에 관한 위원회(금융위원회)의 장래에 관한 테스크포스(Task Force on the Future of the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가 전자거래에 관한 더 많은 집중을 그 목적의 하나로써 설정하면서¹⁾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0년 11월 21-22 양일의 회합에서 은행위원회에 의해 화환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전자 부칙이 논의되었는데²⁾ 이러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현행 UCP500과 종이기반의 신용장에 대한 전자적 등가물 즉, 전자신용장의 처리간의 연결고리를 개발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UCP가 신용장업계를 위한 자율규제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60년의 역사에서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기술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규칙을 새롭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현재 종이에서 전자신용장으로 발전됨으로써 시장은 이러한 거래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ICC에 기대하고 있었다.³⁾ 그 반응으로 은행위원회는 UCP에 대한 부칙(supplement to the UCP)으로서의 적절한 규칙을 준비하기 위하여 UCP, 전자거래, 법적 문제 및 관련산업(예를 들면 운송)에서의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설치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추천을 승인하였고 작업반에 의한 18개월의 집중적인 노력의 결과가 전자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의 통일관습 및 관행에 대한 새 부칙(new 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또는 eUCP이다. 이 eUCP는 2001년 11월 은행위원회 회합에서 투표로 결정되어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원래 2002년 6월 30일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⁴⁾ 4월1일에

1) ICC, *UCP500+eUCP*, No.500/2, 2002, p.53.

2) ICC, Expert ponder e-supplement to documentary credit rules, http://www.iccwbo.org/home/news_archives/2000/e_supplement.asp.

3) Philip Damas, 'E-shippers kick the paper habit,' *American Shipper*, February 2001, p.22.

발효되었다.

2. eUCP의 구성

eUCP는 총 12개조 구성되어 있다. 각 조항의 번호에 있어서 UCP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각 조항의 번호앞에 e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UCP의 경우 전자제시와 관련된 내용만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UCP의 부칙(Supplement)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표 1> eUCP의 구성 및 UCP500과의 대조

eUCP	관련 UCP500 조항
제e1조 eUCP의 범위	제1조 UCP의 적용
제e2조 eUCP와 UCP의 관계	제1조 UCP의 적용
제e3조 정의	관련 조항
제e4조 양식	제20조 서류발행인에 관한 불명확성, 제21조 부정확한 서류의 발행인 또는 내용
제e5조 제시	제42조 서류제시를 위한 만기일자 및 장소
제e6조 심사	제13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e7조 (수리)거절통지	제14조 불일치서류와 통고
제e8조 원본 및 사본	제20조 (c)(ii)
제e9조 발행일자	제22조 서류의 발행일자
제e10조 운송(서류)	제23조-제30조
제e11조 제시후의 전자기록의 변조	제16조 전신송달에 대한 면책
제e12조 eUCP하에서의 전자기록 제시에 대한 책임의 추가적인 면책	제15조 서류효력에 관한 면책

4) ICC The Secretary General, Memorandum re: Updating UCP 500, 24 July 2001, p.1.

3. 글로벌 전자무역에서의 eUCP의 의의와 전자신용장과의 관계

(1) 글로벌전자무역 거래절차와 전자신용장

1) 글로벌전자무역 거래절차

eUCP자체는 거래가 전체 전자제시로 전환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고 있으나⁵⁾ eUCP가 국가위협이 상호계정거래(open account trading)에 대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비효율적인 종이기반의 거래에서 수출입을 위한 완전자동화로의 전환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을 보고 있다.⁶⁾

기존의 신용장거래의 한계로 인하여 전자신용장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존의 신용장거래와 비교하면 그 거래절차는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화증권 등의 선적서류와 관련한 특별한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권리이전과 관련한 절차이다. 현재 권리등록과 관련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블레로서비스인데, 현재로서 블레로 서비스가 독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자신용장거래는 이 블레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5) ICC, UCP500+eUCP, *op.cit.*, p.53.

6) 'Documentary Credits - New electronic rulebook,' *THE TREASURER*, January 2002, p.14.

(2) 글로벌전자무역에서의 eUCP의 의의와 특징

1)글로벌전자무역에서의 eUCP의 의의

① 전자무역의 촉진

전자무역이나 사이버무역에서 사용될 전자제시에 대한 규칙이 제정됨으로써 전자신용장거래의 기반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자 신용장거래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전자무역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던 전자선화증권의 문제도 불레로 선화증권의 도입으로 해결되었고 전자신용장의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전자제시에 대한 UCP500의 부칙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전자신용장이 이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② 전자신용장 통일규칙 제정에 대한 토대제공

궁극적으로 eUCP는 UCP의 부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자제시의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 신용장거래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전자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이 새로 제정되어야 할 것인데 eUCP는 이러한 전자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에 이르는 가교 또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다.

③ 전자무역모델도입의 촉진

전자신용장거래에서의 전자제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제시의 방안이 제시되어 전자무역모델이 급속히 도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지금까지 마땅한 전자무역모델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전자신용장을 근거로 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2) eUCP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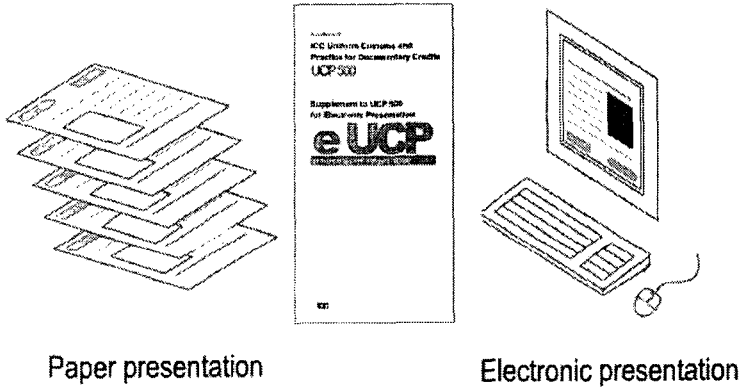
①선적서류의 전자제시에 한정

eUCP는 UCP상에서 전자제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규정을 새롭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eUCP는 현행 UCP상의 용어가 전자제시를 수용하도록 허용하는 정의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UCP와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② 절충주의의 채택

eUCP는 절충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eUCP는 제시가 완전히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종이서류와 전자제시의 혼합 즉, 일부 전자제시, 일부 종이서류의 제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록 관행이 발전되고 있지만 오로지 전자제시만을 규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2> eUCP의 적용



③ 전자신용장자체의 운영방법에 대한 미언급

eUCP는 신용장 발행과 통지와 관련한 특정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신용장을 전자적으로 발행하거나 통지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규명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시장관습과 UCP가 오랫동안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UCP의 많은 조항이 종이 서류의 등가물의 전자제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 어떤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UCP와 eUCP는 병행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UCP와 eUCP는 은행 업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관습 즉, 국제표준은행관습을 허용할 만큼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지속적인 개정의 고려

eUCP는 지속적인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데 즉, UCP는 UCP500에 대하여 특수하고 아마도 UCP의 다음 개정 즉, UCP600 이전에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기술의 발달로 개정되어야 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eUCP는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과 이후의 개정을 허용할 수 있을 판번호(version number) 즉, 판1.0으로서 발행되었다.

⑤ 기술중립성 유지

eUCP는 기술중속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UCP는 특정기술과 개발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종속되지 않고 채용되는 기술과 시스템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즉, 기술과 시스템과 독립적일 수 있도록 초안화되었다. 다시 말해 eUCP는 전자제시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특정기술이나 시스템을 규명하거나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발전하고 있고 eUCP는 당사자들이 사용될 기술이나 시스템에 대하여 자유롭게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eUCP는 양식 예를 들면, 전자우편 또는 다양한 서류처리 프로그램들이 전자메시지의 전송에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당사자자신들이 사용할 양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거래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⁷⁾

⑥ UCP와의 일관성유지

eUCP의 모든 조항은 전자제시와 관련한 특별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UCP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즉, eUCP의 조항이 전자제시와 특별히 관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UCP와 일치성을 유지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종이서류와 전자양식으로서의 제시간에 차이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eUCP에서의 규정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7) Philip Damas, *op.cit.*, p.22.

Ⅲ. eUCP의 주요내용과 서류심사기준

1. eUCP의 주요내용⁸⁾

(1) eUCP의 범위와 주요개념

1) eUCP의 범위

eUCP는 전자기록 또는 종이서류와 전자기록 양자의 제시를 수용하기 위하여 화환신용장 통일관습 및 관행(1993년 개정 ICC발간 제500호)을 보충하는 것이고⁹⁾ eUCP는 신용장이 eUCP가 적용된다고 표시하는 경우에 UCP의 부칙으로서 적용된다¹⁰⁾. 즉, 당사자들이 적용하기로 합의하여 신용장에서 이를 명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곧 발효될 예정인 eUCP는 1.0판(version)인데 관련당사자들이 신용장거래에 eUCP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eUCP를 삽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신용장에서 eUCP의 적용가능한 판(version)을 표시하여야 한다.¹¹⁾ 현재의 eUCP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eUCP 1.0판을 참조하여야 한다. 신용장에서 그 판수를 언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은 신용장이 개설된 일자에 또는 수익자에 의한 승낙된 변경에 의해 eUCP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변경일자에 유효한 판이 적용된다.

2) eUCP와 UCP의 관계

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 즉, eUCP 신용장은 UCP를 명시적으로 삽입하지 않더라도 UCP는 적용되는데¹²⁾ eUCP가 적용되는 경우 그 규정이 UCP의 적용

8) 최석범, "eUCP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200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BUSINESS, E-TRADE, E-MARKET, E-POLICY」,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2.5.11, pp.71-75.

9) 제1조 (a).

10) 제1조 (b).

11) 제1조 (c).

12) 제2조 (a).

과는 다른 결과를 발생시키는 범위까지 그 규정이 우선한다.¹³⁾ 즉, eUCP와 UCP가 상충되는 경우에 eUCP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eUCP 신용장이 수익자가 종이서류 또는 전자기록의 제시시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익자가 종이서류만을 제시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UCP만이 그러한 제시에 적용되어야 하고 eUCP 신용장에 의거하여 종이서류만이 허용되는 경우 UCP만이 적용되어야 한다.¹⁴⁾

3) 용어 정의

eUCP는 용어정의에서 UCP와 관련한 용어와 eUCP에서의 용어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UCP와 관련한 용어로서 eUCP신용장에 의거하여 제시된 전자기록에 UCP를 적용하기 위하여 그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¹⁵⁾

우선, “문면상 보이다(appears on its face)” 등의 용어는 전자기록의 자료내용의 심사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UCP는 종이서류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서류나 전자기록에서는 전면과 후면의 의미가 없으므로¹⁶⁾ 문면상이라는 개념을 전자기록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서류(document)”라는 용어는 전자기록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기록의 “제시장소(place for presentation)”라는 용어는 전자주소(electronic address)를 의미하고 “서명하다(sign)” 등의 용어는 전자서명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류상의 “부기된(superimposed)”, “표기(notation)” 또는 “타인된(stamped)”의 용어는 부가적 속성이 전자기록에서 명백한 자료내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eUCP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¹⁷⁾.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은 우선, 전자수단에 의해 생성되고, 형성되고, 송부되고, 전송되고 수취되거나 저장된 자료이고 송신자의 분명한 신원 그리고 그것에 포함된 자료의 분명한 출처에 관하여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고 변조되지 않은

13) 제e2조 (b).

14) 제e2조 (c).

15) 제e3조 (a).

16) 최석범, “EDI에 의한 국제무역거래에 관한 연구 -해상운송서류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6, p.204.

17) 제e3조 (b).

상태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인증되는 것이 가능한 것 그리고 eUCP 신용장조 건과의 일치에 대하여 심사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서명 (electronic signature)”은 전자기록에 첨부되거나 이와 논리적으로 관련되고, 그리고 어떠한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러한 자의 전자기록의 인증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러한 자에 의해 실행되거나 채용된 자료처리를 의미한다. “양식(format)”은 전자기록이 표시되거나 그것이 언급되는 자료의 구조를 의미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종이서류(paper document)”는 종래의 종이양식으로 된 서류를 의미한다. 그리고 “수취된(received)”은 전자기록이 정보시스템에 의해 수취되는 것이 가능한 양식으로 적용가능한 수신자의 정보시스템에 입력 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어떤 수취확인도 eUCP신용장에 의거하여 전자기록의 수리나 거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2) 양식 및 제시

1) 양식

eUCP신용장은 전자기록이 제시되어야 하는 양식을 명시하여야 하며 전자기록의 양식이 그렇게 명시되지 않는 경우 전자기록은 어떤 양식으로도 제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⁸⁾

2) 제시

eUCP신용장은 전자기록의 제시를 허용하는 경우 전자기록의 제시를 위한 장소를 규정하여야 하고 전자기록과 종이서류 양자의 제시를 허용하는 경우 종이서류의 제시를 위한 장소를 또한 규정하여야 한다.¹⁹⁾ 그리고 전자기록은 별도로 제시될 수도 있고 동시에 제시될 필요는 없다.²⁰⁾

eUCP신용장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기록의 제시를 허용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 은행에게 언제 제시가 완료되었는가를 알리는 통지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완료 통지는 전자기록이나 종이서류로서 제공될

18) eUCP 제e4조.

19) eUCP 제e5조 (a).

20) eUCP 제e4조 (b).

수 있고 그것이 관계되는 eUCP신용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시는 수익자의 통지가 수취되지 않는 경우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²¹⁾

eUCP신용장에 의거하여 전자기록의 각 제시와 종이서류의 제시는 그것이 제시되어야 하는 eUCP신용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제시는 수취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²²⁾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 은행이 영업을 개시하고 있지만 그 시스템이 경우에 따라서는 제시를 위한 규정된 만기일자 및/또는 선적일자로부터의 기간의 최종일자에 전송된 전자기록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폐점된 것으로 간주되고 제시를 위한 일자 및/또는 만기일자는 그러한 은행이 전자기록을 수취할 수 있는 다음 첫번째 은행업무일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여전히 제시되어야 하는 전자기록만이 완료통지인 경우 그것이 은행이 전자서류를 수취할 수 있기 전에 송부된 경우 그것은 전신에 의하거나 종이서류에 의해 제공될 수 있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²³⁾ 인증될 수 없는 전자기록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²⁴⁾

3) 심사 및 거절통지

① 심사

전자기록이 외부시스템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포함하거나 전자기록이 외부시스템에 대한 참조에 의해 심사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경우, 하이퍼링크나 참조된 시스템에서의 전자기록은 심사되어야 하는 전자기록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 표시된 시스템이 심사시에 요구된 전자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불일치를 구성하여야 한다.²⁵⁾

그 지정에 따라 지정은행에 의한 전자기록의 송부는 지정은행이 전자기록의 외관상의 진정성을 점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⁶⁾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있는 경우)은 eUCP에 의해 요구되는 양식으로 심사하거나 양식이 요구되지

21) eUCP 제e4조 (c).

22) eUCP 제e4조 (d).

23) eUCP 제e5조 (e).

24) eUCP 제e5조 (f).

25) eUCP 제e6조 (a).

26) eUCP 제e6조 (b).

않는 경우 제시된 양식으로 전자기록을 심사하지 못하는 것은 거절에 대한 조건이 아니다.²⁷⁾

② 거절통지

서류심사를 위한 기간은 수익자의 완료통지가 수취되는 은행영업일에 이은 첫 번째 은행영업일에 개시된다.²⁸⁾ 서류의 제시 또는 완료통지를 위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서류의 심사를 위한 기간은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 은행이 완료의 통지를 수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은행영업일에 개시된다.²⁹⁾

발행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신하는 지정은행이 전자기록을 포함하는 제시의 거절의 통지를 제공하지만 전자기록의 처분을 위해 거절의 통지가 주어진 일자로부터 30일의 역일내에 거절통지가 그 앞으로 제공된 당사자로부터 지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이전에 반송되지 않은 어떤 종이서류를 제시인에게 반송하여야 하고 어떤 책임없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처분할 수도 있다.³⁰⁾

4) 서류

① 원본 및 사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에 대한 UCP 또는 eUCP 운용장의 요건은 한통의 전자기록의 제시에 의해 충족된다.³¹⁾

② 발행일자

전자기록이 특정 발행일자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전자기록이 발행인에 의해 송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일자가 발행일자인 것으로 간주되고 수취일자는 어떤 다른 일자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전자기록이 송부된 일자인 것으로 간주된다.³²⁾

③ 운송

운송을 증명하는 전자기록이 선적이나 발송일자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전자기록의 발행일자는 선적 또는 발송일자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전자기록이 선적

27) eUCP 제e6조 (c).

28) eUCP 제e7조 (a)(i).

29) eUCP 제e7조 (a)(ii).

30) eUCP 제e7조 (b).

31) eUCP 제e8조.

32) eUCP 제e9조.

이나 발송일자를 증명하는 부기를 포함하는 경우 부기일자는 선적이나 발송일자인 것으로 간주된다. 추가적인 자료내용을 보여주는 부기는 별도로 서명되거나 달리 인증될 필요가 없다.³³⁾

④ 제시후에 전자기록의 변형

발행은행, 확인은행 또는 다른 지정은행에 의하여 수취되었던 전자기록이 변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은행은 제시인에게 통지하고 전자기록이 재제시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³⁴⁾

은행이 전자기록이 재제시되도록 요구하는 경우, 심사를 위한 기간이 중지되고 제시자가 전자기록을 재제시할 때 재개된다. 그리고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경우 지정은행은 발행은행과 어떤 확인은행에게 재제시를 위한 요구 통지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그 중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전자기록이 30일의 역일내에 재제시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전자기록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고 어떤 최종시한은 연장되지 않는다.³⁵⁾

5) eUCP에 의거한 전자기록의 제시를 위한 책임의 추가적인 면책

전자기록의 외관상의 진정성을 점검함으로써 은행은 전자기록의 수취, 인증 그리고 확인을 위해 상업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자료처리의 사용으로 수취된 전자기록에서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송신자의 신원, 정보의 출처, 그 완벽성과 무변조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³⁶⁾

33) eUCP 제e10조.

34) eUCP 제e11조 (a).

35) eUCP 제e11조 (b).

36) eUCP 제e12조.

2. eUCP하에서의 서류심사기준³⁷⁾

(1) 상당일치원칙을 배제한 엄밀일치의 원칙

1) eUCP상에서의 엄밀일치의 원칙의 의의

eUCP상에서는 서류심사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지만 기존의 엄밀일치의 원칙은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조건과 일치하면 수리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이는 은행이 특정한 무역매매나 관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일치하는 서류만을 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서류는 엄격히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있다.³⁸⁾ 그러나 엄밀일치의 원칙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의 재량권이 허용되는 상당일치의 원칙이 적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전자신용장거래를 비롯한 글로벌전자무역거래에서는 문서의 정확성이 배가된다. 이는 문서표준에 의해 생성된 전자문서의 경우는 새로 재입력하지 않고 수신된 자료를 자동으로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 내용중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EDI소프트웨어에 의해 편집체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성이 배가된다. 그래서 전자신용장이 허용되는 제공방법으로서 EDI 메시지를 명시하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메시지의 형태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글로벌전자무역 시스템에서는 표준으로부터 이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종이서류보다는 표준화된 전자메시지를 통하여 쉽게 서류상의 오류와 사기성서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글로벌전자무역에서 서류제공에 있어서의 문제는 판례법에서 발생한다. 판례법은 서류가 신용장에서 규정된 기술과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류를

37) 최석범, "eUCP의 주요내용과 UCP와 eUCP상의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2.2, pp.174~177.

38) Equitable Trust Co. of New York v Dawson Partner Ltd[1927] 27 LILR 49, Moralice(London) Ltd v ED & F Man[1954] 2 Lloyd's Rep 526.

심사할 때 은행은 모든 서류를 살펴볼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³⁹⁾ 이는 EDI 메시지로 인한 문제로서 전자서류가 자동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 기술은 사전에 정의된 기술항목내에 완전히 포함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자신용장에서 은행은 서류의 기술항목이 전자신용장상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비록 다른 항목에서 일치하는 충분한 추가기술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전자서류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류를 심사할 때 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사과정은 신용장에서 약정된 다른 서류가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⁴⁰⁾ 전자신용장에서 그러한 심사에 대해 사용되는 방법은 합의된 메시지의 구조에 달려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물품의 기술이 운송서류나 보험증권, 상업송장에 있으면 이러한 항목의 내용을 대조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전자신용장의 초기에는 은행은 표준적인 종이거래보다도 훨씬 더 신중하게 서류를 심사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은행의 표준관례가 정착되지 않은 실정이고 실무자가 전자신용장거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서류심사에서 이러한 가중된 책임은 서류가 비정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데⁴¹⁾ 거절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서류상의 그러한 내용은 은행이 UCP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단서에 대하여 은행이 모든 수반서류를 주의깊게 심사하도록 하는 적색신호(Red Flag)이다.⁴²⁾ 전자신용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인데 아주 사소한 불일치라고 하더라도 서류심사상 엄밀일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자신용장이 좀 더 보편화됨에 따라 특수한 심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⁴³⁾ 왜냐하면 자동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엄밀일치의 원칙이 완화되어 적용되던 상당일치의 원칙은 전자신용장거래에서는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서류심사에 있어서 은행의 재량권도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39) Midland Bank Ltd v Seymour[1955] 2 Lloyd's Rep 147.

40) 신용장통일규칙 13조.

41) E. P. Ellinger, *op.cit.*, p.161.

42) Liberty Natuional Bank & Trust Co. of Oklahoma v Bank of America National Trust & Savings Association 116 F. Supp. 223, p.240 [1953], affirmed 218 F. 2d 831 [1955].

43) C. Reed, 'Negligence and Computer Software' *Journal of Business Law*, 1985, p.444.

2) 서류일치의 구성요소

① 전자기록의 완전성과 무변조성

eUCP에서는 전자기록을 전자수단에 의해 생성되고, 형성되고, 송부되고, 전송되고 수취되거나 저장된 자료로서 정의하고 있고 송신자의 분명한 신원, 그것에 포함된 자료의 분명한 출처,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고 변조되지 않은 상태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인증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자기록의 완전성과 무변조성이 우선 심사되어야 한다. eUCP신용장에 따른 전자기록은 완전성 즉, 반드시 법률적, 사실적으로 유효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문면상으로도 정규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즉, 지정된 전자기록은 각 요건에 맞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자기록은 eUCP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에 대하여 심사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심사되는 것이 불가능한 전자기록은 불일치한 서류로서 간주된다.

② 양식의 일치성

eUCP신용장은 전자기록이 제시되어야 하는 양식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eUCP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전자기록이 제시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양식으로 제시되지 않는 전자기록은 불일치한 서류로서 간주된다. 물론 전자기록의 양식이 그렇게 명시되지 않는 경우 전자기록은 어떤 양식으로든 제시될 수 있다고 eUCP에 규정되어 있지만 전자제시를 위해서는 공통양식으로 서류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즉, 문면상 일치여부를 자동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통양식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③ 제서류의 제시요건의 일치성

우선, eUCP신용장에서 규정된 전자기록의 제시장소인 전자주소에 제시되어야 한다. 전자주소로 제시되어야 하지 영업점으로 제시되는 것은 불일치한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전자기록의 각 제시는 eUCP 신용장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전자제시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셋째, 인증될 수 있는 전자기록이어야 한다. 인증될 수 없는 전자기록은 불일치한 서류로서 간주된다.

넷째, 하이퍼링크나 참조된 시스템의 전자기록은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 표시된 시스템이 심사시에 요구된 전자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불일치를 구성한다.

다섯째, eUCP에서 지정된 전자기록은 통수는 한통의 전자기록의 제시로 충족된다. eUCP신용장에서 수통의 전자기록이 제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통의 전자기록의 제시로 충족된다는 점이다.

여섯째, 변형된 전자기록의 경우 재제시되어야 하고 30일의 역일내에 제시되어야 하고 이 기간내에 재제시되지 않으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 국제표준은행관습과 심사기간

1) eUCP하에서의 국제표준은행관습

서류심사의 기준이 되던 국제표준은행관습도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고 할 수 있다. 서류의 일치와 관련된 심사기준으로서 사용되던 국제표준은행관습도 전자제시에 의한 서류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서류의 정확성이 배가되고 서류상호간 그리고 신용장조건과 서류간의 일치여부에 대한 심사가 자동점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되는 정도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은행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 개입되는 국제표준은행관습도 그 만큼 그 의미가 퇴색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전자기록의 심사기간

eUCP는 서류심사의 개시일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으나 서류심사기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UCP에서 적용하고 있는 서류수취후 제7영업일이 준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안과정상 제시완료통지를 접수한 그 다음날로부터 제5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상당한 기간동안 서류를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후에 이 부분이 삭제되었던 것 같다.⁴⁴⁾ 그러나 전자서류의 경우에 서류심사기간에 있어서의 신속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서류심사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였다.

44) <http://www.mantissa.co.uk/support/newtrade.htm>.

IV. eUCP에서 전자제시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1. 전자제시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⁴⁵⁾

(1) 전자제시상의 문제점

1) 전자기록의 양식문제

전술한 바와 같이 eUCP신용장은 전자기록의 제시양식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양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어떤 양식으로든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전자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서류에 입각한 거래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eUCP 신용장에서 제시양식이 명시되지 않으면 비표준적인 전자기록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자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자동점검(auto checking)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작업으로 심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은행측의 업무과중화

전자기록과 종이서류의 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주소로 전자기록을 제시하여야 하고 종이서류는 별도의 제시장소에서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은행측에서는 전자기록은 전자기록대로 심사하여야 하고 종이서류는 종이서류대로 심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종이서류로 제시될 경우와 비교하면 처리절차가 더 복잡하게 되어 업무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

3) 제시회수와 관련한 문제

eUCP규정상 전자기록의 제시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전자제시에 대하여 은행측에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발생

45) 최석범, "eUCP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전게서, pp.100~103.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은행에서 처리하는 신용장거래 건수가 많을 경우 그 해당건수마다 요구되는 각 전자기록이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과연 은행이 그 전자기록을 신용장과 연계하여 업무 즉, 서류심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즉, 서류접수시스템을 얼마나 잘 개발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전자신용장거래에서 더 단순화된 업무가 필요한데 업무가 더 복잡하게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4) 수익자의 완료통지의무상의 문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기록의 제시가 있는 경우 수익자에게 전자제시의 완료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eUCP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전체의 제시여부는 은행에서 판단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문제이지 제시가 다 이루어졌다는 완료통지를 수익자가 하도록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자에게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수익자가 서류를 제시하였다고 생각하고 완료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완료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익자는 대금결제상의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5) 서류심사기간의 불명시

eUCP는 서류심사의 개시일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으나 서류심사기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UCP에서 적용하고 있는 서류수취후 제7영업일이 준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초안과정상 제시완료통지 접수한 그 다음날로부터 제5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상당한 기간동안 서류를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후에 이 부분이 삭제되었던 것 같다.⁴⁶⁾ 그러나 전자서류의 경우에 서류심사기간에 있어서의 신속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서류심사기간에 대한 명확히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였다.

46) <http://www.mantissa.co.uk/support/newtrade.htm>.

6) 재제시와 관련한 문제

수취된 전자기록상의 변형이 있는 경우 제시인에게 전자기록을 재제시하도록 은행은 요구할 수 있는데 30일의 역일내에 재제시되지 않으면 전자기록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일단 은행에서 수리되어 수익자에게 대금이 지급된 이후의 과정에서 전자기록상의 변형이 있는 경우 수익자가 재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며 재제시하는 경우에도 신용장의 만기일자가 자동적으로 30일의 말일까지 연장되는가 등의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할 수 있다

(2) 개정방안

1) 은행측의 자동심사가 가능한 양식으로 한정

전자기록의 양식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자동심사를 할 수 있는 양식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기존에 제시된 양식으로 제시되거나 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표준양식에 의해 제시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2) 전자기록의 제시로만 한정

전자무역의 초기단계에서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가급적으로 전자기록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eUCP 신용장하에서 제시되는 종이서류에 대한서는 건당 수수료를 부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3) 선적서류 접수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eUCP에서는 선적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접수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볼레로 서비스에서 이용하고 있는 전자기록의 DB화를 통하여 여러 번 제시되더라도 언제라고 DB에 접속하면 접수된 서류의 건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은행에서 서류접수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수익자의 완료통지에 상응하는 은행측에서의 접수통지의무를 부가
수익자의 완료통지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측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수익자가 서류를 제시하면 그 제시 내용을 수익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수익자가 완료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 서류심사기간의 명확화

그리고 전자신용장거래에서는 신속한 서류의 전달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적서류의 자동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적서류의 접수가 완료된 후 2-3일 이내에 수리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6) 전자무역서비스업체의 기록요청이나 이중시스템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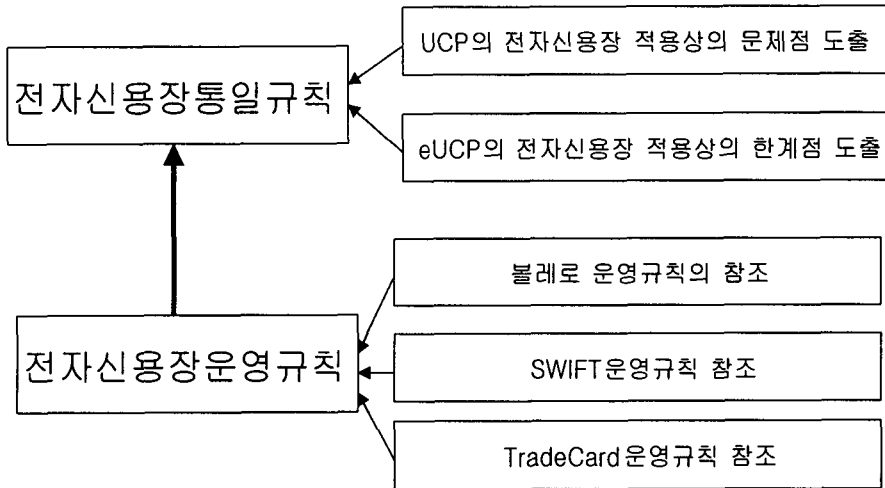
수익자에게 서류의 재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서류가 전송되는 전자무역서비스업체에게 기록을 요청하거나 은행측에서의 이중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멸실 등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방안

(1)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방향

우선 eUCP의 적용상의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도출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한계점을 근거로 하여 기존의 UCP, 볼레로 규약집(Bolero Rulebook), SWIFT의 룰 등을 참조하여 전자신용장거래에 적합한 통일규칙을 제정하여야 하고 보다 기술적인 문제들은 운영규칙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볼레로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과 같이 주요한 통일규칙을 정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부칙으로서의 운영규칙에서 다루어줌으로써 체계적인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방향



(2)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신용장통일규칙을 근거로 하여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분	내용
적용범위	eUCP 제e1조의 내용
정의	eUCP 제e3조의 내용, 전자신용장의 의의
전자신용장거래원칙	전자신용장과 계약, 전자서류와 물품 등
전자신용장발행 및 변경 지시	전자신용장 발행 및 변경지시에 대한 내용 전자신용장 발행과 변경절차에 대한 내용
신용장의 형식과 통지, 양도	신용장형식, 통지은행의 의무 및 통지절차, 신용장의 취소와 취소절차, 개설은행, 통지은행의 의무, 신용장의 유형, 예고 신용장, 불완전하고 불명확한 통지, 신용장의 양도와 관련한 내용
의무 및 책임	서류심사의 기준과 기간(제7영업일보다 단축된 기간), 자동심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 불일치한 서류와 통지, 서류효력에 대한 면책, 서류송달상의 면책, 불가항력, 피지시당사자 행위에 대한 면책, 은행간 상환에 대한 내용
제서류	서류발행인의 자격에 대한 내용, 전자서명, 서류발행인과 내용의 불확정, 서류의 발행일과 신용장개설일, 기타 서류와 관련한 내용
인증 및 제3자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내용	인증업무에 대한 내용, 제3자 서비스의 선택기준, 서비스의 이용시의 사고와 관련한 내용(기본적인 내용)
기타	과부족, 분할선적 및 어음발행, 할부선적 및 어음발행, 만기일자에 대한 제한 및 연장, 제시시간, 선적이거나 선적기간과 관련한 용어해석

V. 결론

이상으로 금년 4월 1부로 발효된 eUCP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eUCP의 도입으로 전자신용장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사이버무역이나 전자무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eUCP가 제정되어 발표됨으로써 전자신용장통일규칙 제정에 대한 토대가 제공되었으며 전자무역모델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eUCP의 특징으로 선적서류의 전자제시에 한정, 절충주의의 채택, 전자신용

장자체의 운영방법에 대한 미언급, 지속적인 개정의 고려, 기술중립성 유지, UCP와의 일관성유지 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우선 원활한 전자신용장거래를 위해서는 현재의 eUCP를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방향과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eUCP상의 표현과 관련하여 좀 더 명확한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리고 eUCP상의 제시와 관련하여서는 전자기록의 양식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측의 자동심사가 가능한 양식으로만 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은행측의 업무과중화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측의 자동심사가 가능한 양식으로 전자기록의 양식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제시회수와 관련한 문제와 관련하여 선적서류 접수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익자의 완료통지의무상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수익자의 완료통지에 상응하는 은행측에서의 접수통지의무를 부가할 필요가 있다. 서류심사기간의 불명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류심사기간이 명확화되어야 한다. 재제시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무역서비스업체의 기록요청이나 이증시스템의 구축 등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eUCP가 전자신용장거래를 원활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문자체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전자제시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전자신용장거래가 사이버공간에서 완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 향후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김덕권, “화환신용장거래의 조건일치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12.
- 최석범, “EDI에 의한 국제무역거래에 관한 연구 -해상운송서류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6.
- _____, “글로벌전자무역시대에서의 전자신용장의 본질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2000년 무역학자 전국대회발표논문집-국제상무분과」, 한국무역학회, 2000.06.
- _____, “글로벌전자무역시대에서의 전자신용장의 본질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5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0.12.
- _____, “전자신용장의 본질과 서류의 전자제시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0.06.29.
- _____, “eUCP의 주요내용과 UCP와 eUCP상의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2.2.
- _____, “eUCP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춘계학술 발표회논문집」, 2002.5.
- _____, “eUCP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2002년 춘계국제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통상환경의 변화·전자무역에 따른 국제상관습의 제문제」, 한국국제상학회, 2002.5.25.
- _____. 홍성규, “글로벌전자무역에서의 eUCP의 의의와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2002년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전자상거래 국제규범의 동향과 전망」, 한국통상정보학회, 2002.6.20.
- ICC The Secretary General, Memorandum re: Updating UCP 500, 24 July 2001.
- Boris Kozolchik, “The Paperless Letter of Credit and Related Documents of Title,”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Vol.55, No.3, Summer 1992. <http://www.mantissa.co.uk/support/newtrade.htm>.
- ICC, Expert ponder e-supplement to documentary credit rules, http://www.iccwbo.org/home/news_archives/2000/e_supplement.asp.
- ICC, *UCP500+eUCP*, No.500/2, 2002.
- Peter Jones, “The Paperless Letter of Credit-Bolero’s Legal Platform,” www.webcom.com/pjones/bolerole.html.

Philip Damas, "E-shippers kick the paper habit," *American Shipper*,
February 2001.

"Documentary Credits - New electronic rulebook," *THE TREASURER*,
January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Roles and Revision of eUCP for Global Electronic Trading

Choi, Seok Beom · Hong, Sung Kyu

In the Spring of 2000, the Banking Commission of the ICC decided to appoint a working group to draft a supplement to the UCP 500 to clarify the position regarding electronic presentation under a documentary credit. Provisions was drafted to supplement its existing rules for documentary credit, that is, UCP 500. These new provisions known as Supplement to UCP 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was approved by the ICC Banking Commission at the beginning of November 2001 and came in force as of 1 April 2002

The eUCP covers matters such as definitions of key terms such as electronic record, electronic signature, format, paper document, received. An eUCP Credit must specify the formats in which electronic records are to be presented and if not, electronic records may be presented in any format. Electronic records may be presented separately and need not be presented at the same tim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main substance of eUCP and to facilitate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letter of credit by studying the problems and revision of eUCP and new electronic UCP.

The main substances of eUCP are electronic address as place for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s, flexibility of the formats of electronic records to be presented, endowment of the notice of completeness of presentation to the beneficiary, one electronic record satisfying one or more originals or copies of an electronic record, the electronic records to be

examined including the electronic record at the hyperlink to an external system or the referenced system, no remark as to the time period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The Roles of eUCP are the Promotion of the Electronic Trade, the Supply of Basis on the Uniform Rules for Electronic Letter of Credit,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Trade Model. The characteristics of eUCP are a supplement to the UCP, no address of any issues relating to the issuance or advice of Credit electronically, independence of specific technologies and developing electronic commerce system, that is, Bolero Service.

The Problems of eUCP are flexibility of format of electronic record, heavy burden on the side of banks, and the problems regarding the number of presentation, the notice of completeness of presentation, no provision in regard to the time to examine the electronic records, and representation of the electronic records.

In the revision of eUCP to resolve the problems, the thing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re as follows; the designation of the format allowing the banks to examine electronically, prohibition of the paper documents,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receiving the electronic records, the addition of the reception notice on the side of the banks, the setting of the time to examine the electronic records, the construction of the backup system or the dual processing system.

Keywords : UCP, eUCP, Electronic Presentation, the examination of the documents
